

<첨부> 저출산·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설명자료

I. 서 론

-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거시경제와 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 측면과 가계 측면에서 저출산·고령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함.

II. 저출산·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

- 우리나라는 저출산·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임.
 -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, 2030년에는 2.7명이 노인 1명을, 2050년에는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.
- 우리나라는 출산율(1.2명)이 OECD 평균(1.8명)보다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임.
 - 저출산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결혼 감소, 초산 연령 증가 등이 거론되나 이 이면에는 고용불안 심화, 주택마련비용 증가, 결혼관의 변화, 자녀관의 변화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,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.
- 또한 총인구의 26.9%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(1차: 1955~63년 출생, 2차: 1968~74년 출생)의 은퇴시기(55세)가 2010년 도래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미치기 시작함.
 - 일본의 경우 인구의 5.5%를 차지하는 단카이세대(1947~49년 출생) 은퇴로 숙련노동력 부족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한 바 있음.
- 따라서 속도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거시경제 및 가계에 미칠 저출산·고령화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.

Ⅲ. 저출산·고령화와 경제성장, 재정 및 금융시장

1. 저출산·고령화와 경제성장

■ 저출산·고령화는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볼 때, 저축률 하락, 자본축적 둔화, 노동공급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
○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9년 4% 중반에서 2020년 3%, 2030년 2%, 2050년 0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■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1인당 교육투자가 확대될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될 수도 있음.

○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양(+)의 경제성장을 유지함.

○ 우리나라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이 나타날 개연성이 적지 않음.

－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 보다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.

○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요함.

■ 저출산·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,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,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이 필요함.

2. 저출산·고령화와 재정

■ 저출산·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○ 2005년 기준으로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20.5%인 반면 우리나라는 6.9%에 불과하나 동 비중은 2030년 14.4%, 2050년 20.8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■ 특히 향후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박형수·전병목(2009)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은 2009년 GDP 대비 0.3%에서

2030년 1.22%, 2050년 1.64%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-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0.28%에서 2030년 1.65%, 2050년 2.71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저출산·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-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자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의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.

3. 저출산·고령화와 금융시장

■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과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.

■ 그러나 저출산·고령화가 자산가격 및 수익률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함.

-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가구는 음(-)의 저축을 보여야 하는데, 실증분석 결과 은퇴가구도 양(+)의 저축을 실현하고 있으며,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금융자산 수요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 공급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임.
- 한편, 실질이자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출산·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실질기준으로 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.

■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무엇보다도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드는 한편,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대,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.

■ 저출산·고령화의 진전은 주로 저축률 하락과 금융자산 수요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변화에 금융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.

- 금융이 노후소득보장 및 노후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, 주택연금, 민영건강보험 등을 개발·제공할 필요가 있음.
- 이럴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완화되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상쇄될 수 있을 것임.

IV. 저출산·고령화와 가계

1. 저출산·고령화와 가계소비, 저축 및 자산

■ 은퇴 이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생애주기가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음.

- 4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18%로 가장 낮고 6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26.5%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- 금융자산은 은퇴 직전(59~54세)에 가장 많고 부채는 이보다 이른 40~43세(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)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■ 은퇴 이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임.

- 은퇴 이후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, 이는 은퇴 이후 순자산이 부족함을 깨닫는 한편,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함.

■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면 실물자산(비중 79%)에 집중되어 있고 노후 대비와 관련된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음.

-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보험 및 연금이 24%를 차지하고 있는데, 미국 30%, 일본 27%, 영국 54%에 비해 비중이 낮음.

2. 저출산·고령화와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

■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득 감소,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(53.6%)과 의료비,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(41.3%)인 것으로 조사됨.

■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현재 소득의 58.9%이나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0% 정도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안종범·전승훈(2006)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5%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음.
-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51.9%가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, 37.6%가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함.

■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,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%인 저소득층이 51% 차지하여 OECD 평균 30%에 비해 매우 높음.

■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가계의 저축률이 하락하지 않는데, 이는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함에 따라 부의 부족과 건강위험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임.

○ 가계자산구성 측면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필요한 노후대비에 취약함.

○ 노인가구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며 은퇴를 앞둔 세대의 경우 역시 노후준비가 부족함.

V. 저출산·고령화와 공공부문의 역할

1. 가계위험 관리

가. 공적연금

■ 국민연금은 1999년 4월부터 가입대상이 전국민을 포괄하게 되었고 두 차례의 보수적 개혁을 통해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의 보장수준을 70%에서 40%로 크게 낮춤.

○ 그러나 204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인데,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으나 적절하게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.

○ 한편,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무기여연금 방식으로 도입되었는데, 전체 노인의 약 70%에게 매월 9만 원이 지급되고 있음.

■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(1960년 1월 시행), 사립학교교직원연금(1975년 시행), 군인연금(1963년 시행) 등인데,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재정적자로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임.

○ 사학연금도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.

■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첫째,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.

■ 둘째,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.

○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

하므로 실제로 소득대체율은 40%가 아니라 30%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음.

■ 셋째,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함.

○ 203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은 60~70%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.

■ 개선방안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.

○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시급한데,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○ 국민연금의 경우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.

나. 국민건강보험

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

○ 첫째, 보장성(2008년 급여율이 56.6%)이 OECD 국가(평균 80%대)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재정수지에 연동되어 있음.

○ 둘째,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음.

-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의 연도별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.

-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함.

■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.

○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노인의료비 절감과 민영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.

○ 민영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노후건강에 대한 자조노력이 필요함.

다. 노인장기요양보험

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식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와 중증 대상자만이 혜택을 받음.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은 크게 치매와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임.

○ 동 질환자 수는 2002~07년간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에 달하고, 65세 이상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같은 기간 6.8%에서 10.8%로 증가함.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급여 대상자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차상위 중증 대상자들에게까지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.

라. 사회복지

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이 높고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음.

○ 2008년 기준 노인인구의 31.3%가 절대빈곤층, 32.7%가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노인인구의 빈곤률이 매우 높음.

○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령자는 2010년 46%에 불과하고, 연금수령자 가운데 85%는 50만 원 미만을 수령함.

■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.

○ 박형수·전병목(2009)의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2009년 8.1%에서 2040년 17.1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복지재정을 통한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조할 수밖에 없으나 저출산·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■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지출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2. 거시경제위험 관리

가. 저출산·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기본계획

■ 정부는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였고, 2010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11년

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예정임.

○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,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.

－ 제1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정비되었으나,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
○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임.

－ 구체적으로 ‘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’을 목표로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,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,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, ④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227개의 과제를 구성함.

나. 성장잠재력 확충

■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함.

○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－ 출산전후휴가 보장 및 근로시간 제한, 육아휴직제도 운영, 여성고용 촉진시설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.

■ 저출산·고령화의 진전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.

○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성 수준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－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.7% 증가하였으나,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.3% 증가에 그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도 1995년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추월하여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0% 수준에 불과함.

－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%, 프랑스의 52%, 일본의 54% 수준임.

■ 서비스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가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를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함.

○ 첫째, 서비스업 중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.

－ 김현정(2006)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 비중과 경제성장간에 유의한 정(+)의 관계가 존재함.

－ 저출산·고령화 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특히 낮은 교육, 의료,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부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.

○ 둘째, 정채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■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채 또는 감소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R&D 투자 등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.

○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업의 영세성 및 저수익성으로 인한 투자여력 악화,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투자 제약, 외국인투자 저조 등이 거론됨.

○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와 시장확대를 유도하고,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,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다. 재정건전성 유지

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.

○ IMF가 추정 한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부담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2% 수준임.

○ 이는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.

■ 저출산·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정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함.

○ 첫째, 저출산·고령화는 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을 늘려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됨.

○ 둘째,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.

－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조세수입만으로 국가부채 상황이 어렵고 화폐화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함.

－ 더욱이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가 높아질수록 실질가치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높은 물가상승을 용인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.

라. 금융인프라 구축

■ 금융이 저출산·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위험(자산·부채 만기 불일치)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.

○ 첫째,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.

－ 특히 저출산·고령화와 관련하여 장기국채발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.

○ 둘째,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연동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.

○ 셋째, 장기국채시장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○ 넷째, MBS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.

VI. 저출산·고령화와 금융의 역할

1. 가계위험 관리

가. 사적연금

■ OECD 주요국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, 조기퇴직,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.

■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으로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함.

○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■ 그러나 실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(표준근로자기준)을 분석한 결과(가입기간 35년), 사적연금(퇴직연금 + 개인연금)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(소득대체율)은 약 20% 정도에 불과함.

○ 표준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12.5%,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7.5%(월 20만 원 가입)인 것으로 나타남.

■ 따라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,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,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- 미국의 경우 1975년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(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)이 단지 17.4%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1985년 33.3%, 2000년 이후에는 50%를 상회함.
- 영국의 경우 은퇴 후 연금시장은 1996년 이후 3배 이상 성장하여 2007년 140억 파운드 규모이며 성장추세가 지속됨.
- 일본 역시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연금시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액연금보다 변액연금의 성장세가 뚜렷함.

■ 둘째,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·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발생하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스왑(Longevity Swaps), DB 플랜 바이아웃(DB플랜 Buy-out)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개발함.
- 우리나라도 DB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80%에 이르고 있고 머지않아 퇴직연금급부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됨.
 - 또한, DC형과 연계된 은퇴시점 수익보장형상품(예: Quaranteed Income for Life, Income Flex)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■ 셋째,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(실질소득 대체율 증대)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이 필요함.

- 특히 퇴직시점에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(Life Cycle Fund)형 투자상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률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.

나. 민영의료보험

■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.

-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90%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 상태임.
-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수는 2002~07년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이었고 노인인구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2002년 6.8%에서 2007년

10.8%로 증가함.

-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어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, 금융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함.

■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약관상 명시된 보장제외항목을 제외하고 임의비급여의료를 포함한 모두를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영의료보험이 임의비급여를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.

■ 실손형 의료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■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임.

- 그러나 노인인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다. 장기간병보험

■ 장기간병보험(LTC: Long-term Care)은 이동하기, 식사하기,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상장애 상태나, 기질성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돌봐야 하는 치매 상태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임.

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.

- 첫째,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민영장기요양보험의 잠재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·사 협력방안,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.
- 둘째,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함.
 - 이것은 다양한 정액형 상품과 실손형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며, 보험료 산정 시 안전 할증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- 셋째, ‘치매 상태’ 혹은 ‘일상생활장애 상태’, ‘활동불능 상태’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- 넷째,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함.
- 다섯째, 정액형 장기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음.

■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실손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·사 보험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.

- 실손형 장기건강보험은 공적 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적 보험의 확실히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소득이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추가 또는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장기건강보험은 공적 보험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.
- 치매에 집중되어 있는 정액형 장기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확대해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라. 자산관리서비스

■ 자산관리서비스는 ‘복합적인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, 고객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’임.

-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함.
- 즉, 평균생활 유지 목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, 생활수준 개선 목표를 위해서는 고위험·고수익 투자가 포함되는 한편, 기본생활 보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상품이나 연금의 활용이 요구됨.

■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취급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(MMI 2008)임.

- 자산관리서비스는 한 계좌에서 단일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SMA부터 시작하여,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MDA를 거쳐,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 및 금융상품 유형을 수용하는 UMA로 진화함.

■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, 복잡성, 효율성,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.

- 무엇보다도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기 때문임.
-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개별성을 제외하면 신탁과 집합투자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.
 -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자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잡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.

■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① 복잡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 도입,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 인프라 개선, ③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.

- 첫째, 신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신탁 도입이 요구됨.
 -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객의 소비 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상품, 금융투자상품, 보험상품,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- 둘째, 판매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방형·판매플랫폼 구축이 요구됨.
- 셋째, 적합성원칙에 기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 보고기준의 활용이 요구됨.

2. 거시경제위험 관리

가. 금융중개기능 및 경쟁력 제고

■ 금융중개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.

■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기능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-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측면에서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많이 공급하고 있음.
- 회사채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10% 내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됨.
- 보험의 경우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에 의한 신용대출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권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음.

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음.

- 첫째,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

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음.

- 둘째,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 및 주식의 단순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,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셋째,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(relationship lending)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음.

■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.

-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.
-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.
 - 강중구(2005)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이 높거나 부실여신비율이 낮을 수록 기업대출, 중소기업대출 및 설비자금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개선을 통한 신인도를 제고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.

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경우 첫째,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임.

-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,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.
- 금융부문은 고유의 기능(금융중개, 위험관리, 가격발견, 선별감시, 정보생산 등)을 통해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시장조성자(market facilitator)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.
 -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할 경우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함.
-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.

■ 금융중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둘째,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.

-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임.
- 금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산업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달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.

나. 고령친화산업 지원

- 고령친화산업진흥법(제2조)에 따르면,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·개발·제조·건축·제공·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임.
-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음.
- 고령친화산업의 의의는 ① 동 산업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, ②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세대의 건강·재무·생활 위험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, ③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음.
- 국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① 인식 부족, ② 시장성에 대한 불신, ③ 제도적 제약, ④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-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① 고령친화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, ② 시장성 제고, ③ 제도 개선, ④ 장기성장성 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- 초기에 정부 주도로 법·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, 중기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단법인이나 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다만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,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.
- 금융부문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이 제공 가능함.

VII. 결론

- 우리나라는 저출산·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인구의 26.9%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속도나 규모면에서 저출산·고령화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.
- 저출산·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, 재정건전성 위협,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,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건강 등 가계위험을 유발할 것임.

■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·고령화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, 저출산·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고,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음.